발간등록번호
11-1790365-000029-0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6.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본권】 가명정보 제도 안내편

2026.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65-000029-0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본권] 가명정보 제도 안내편

2026.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안내 사항

발간 목적

본 안내서는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에서의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개정 이력

가명정보 관련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일자	주요 내용
'20 9. 발간	가명정보 처리 특례 활용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안내
'21.10. 개정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21년) 사항 반영, 결합방식 개선사항 안내
'22. 4. 개정	가명정보 처리 절차 구체화, 결합유형 안내, 참고사례 및 FAQ 추가 수록
'24. 2. 개정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년) 사항 반영
'26. 3. 개정	대상 독자별 가이드 분리(본권, 별권),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 기준 마련, 위험도 기반 가명처리 절차·서류 차등화, 가명처리 관련 서식 통폐합·간소화 등

재검토 기한

안내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일(2026년 3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까지를 말함)마다 보완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표시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6.03.

문의처

안내서 내용 관련 문의는 소관 법령별로 다음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88, 3079, 3049)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 법령 최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을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정책·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또는
가명정보 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이렇게 활용하세요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독자의 전문성과 필요에 따라 **[본권 : 제도 안내편]**과 **[별권 : 처리 실무편]**으로 분리하여, 데이터 활용의 문턱은 낮추고 실무의 전문성은 강화하였습니다.

1. 읽기 전에 확인하세요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3절(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가명정보 처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우선 순위)** 공공분야, 보건의료,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계 부처와 공동 발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 예)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 나에게 맞는 가이드는? : 독자별 맞춤 활용법

구 분	대상 독자	주요 내용
[본권] 가명정보 제도 안내편	☑ 일반 국민 ☑ 데이터 초급 실무자 ☑ 가명정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자	● 가명정보의 기본 개념 및 법적 근거 ● 주요 가명처리 절차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원칙·기준 ● 자주 묻는 질문
[별권] 가명정보 처리 실무편	☑ 데이터 실무자 ☑ 기관 담당자 ☑ 적정성 검토위원 ☑ 가명정보 업무 수행자 등	●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세부 내용 ● 가명처리 기술 및 기법 ●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방법 ● 서식 및 운영 문서 작성 방법 ● 상황별 예시 시나리오

3. 궁금한 것만 골라보세요 : 한눈에 보는 목차 안내

궁금한 사항	관련 목차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는 무엇이 다른가요?	[본권] 제1장. 2. 가명정보란 무엇인가요?
● 가명처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본권] 제2장 가명처리 절차
● 이미지·영상, 텍스트 등은 어떻게 가명처리 하나요?	[본권] 제3장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 서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를 결합해서 활용하려면?	[별권] 제2장 가명정보의 결합
● 가명처리 후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별권] 제3장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가이드
● 활용 가능한 가명처리 기술·기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별권] 제4장 가명처리 기술 및 기법
● 실제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양식이 있나요?	[별권] 제5장 서식 모음
● 가명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활용 사례가 궁금해요 ● 우리 기관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고 싶어요	[별권] 제8장 가명정보 활용 참고 시나리오

4. 이렇게 읽으면 가장 쉽습니다 : 내 상황에 딱 맞는 정주행 코스

	Case	본권	별권
1	가명정보가 처음이라 감을 잡고 싶어요	제1장 개념파악 → 제2장 절차 훑기 → 제4장 Q&A로 궁금증 해결	
2	당장 실무에 적용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해요	제2장 절차 숙지	제4장 기술·기법 선택 → 제5~6장 서식 및 운영문서 작성
3	다른 기관과 데이터 결합해 분석하고 싶어요	제1, 2장 개념·절차 이해	제2장 결합 규정 확인
4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제3장 비정형데이터 기준 확인	제4장 비정형 가명처리 기법 선택 → 제8장 비정형 사례 참고
5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CPO 등)에요	제1장 특례 규정 및 법적 책임 확인	제3장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가이드 → 제6장 내부관리계획 등 운영문서 검토

5.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가명정보 관련 지원 인프라·컨설팅 안내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

- 가명정보 컨설팅, 기술지원, 교육·훈련, 전문가 풀, 수요·공급 연계, 결합신청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 전국 주요 지역별 거점에 설치된 센터에서 가명처리 인프라·솔루션, 컨설팅, 교육 및 실습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방문 예약/신청)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목차 Contents



가이드라인, 이렇게 활용하세요

본권 가명정보 제도 안내편

제1장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 3

1. 가명정보 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3
2. 가명정보란 무엇인가요? 4
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10

제2장 가명처리 절차 23

1. 사전 준비 24
2. 위험성 검토 37
3. 가명처리 42
4. 적정성 검토 47
5. 안전한 관리 51

제3장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57

1. 개요 57
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의 특수성 및 고려사항 58
3.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본원칙 59
4.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단계별 고려사항 65

제4장 자주 묻는 질문 (Q&A) 77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목차 Contents



별권 가명정보 처리 실무편

제1장 용어 정리 3

제2장 가명정보의 결합 9

1. 개요 9
2.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11
 - ■ 결합 신청 14
 - ■ 결합 및 추가 가명처리 18
 - ■ 반출 및 활용 26
 - ■ 안전한 관리 28
3. 결합의 다양한 유형 29
4. 시계열 분석을 위한 반복결합 절차 37

제3장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가이드 43

제4장 가명처리 기술 및 기법 49

1. 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49
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70

제5장 서식 모음 83

(서식❶)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83
(서식❷)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 84
(서식❸) 위험성 검토서 85
(서식❹) 가명처리 계획서 86
(서식❺) 가명처리 결과서 87
(서식❻) 비정형데이터 추가검수 결과서 88
(서식❼) 적정성 검토 결과서 89
(서식❽) 적정성 평가위원 서약서 90
(서식❾) 안전조치 이행 확약서 91
(서식❿) 가명(추가)정보 관리대장 92

목차 Contents

제6장 가명정보 처리 관련 주요 운영문서 작성 가이드 97

1. 내부관리계획 작성 방법 97
2. 가명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 방법 100
3.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방법 102
4.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작성방법 105
5. 결합정보 반출신청서 작성방법 108

제7장 가명정보 활용 위험도 판단 예시 113

1. 저위험 판단 사례 113
 (1) 가명정보 반복제공 사례 113
 (2) 가명정보 유사제공 사례 (연구자 추가·변경) 118
 (3) 내부 부서 간 가명정보 제공·활용 사례 123
 (4) 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사례 127
 (5)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131
2. 중위험 판단 사례 136
 ■ 기관 내부 분석공간에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136
3. 고위험 판단 사례 144
 ■ 비정형데이터 처리로 위험도를 상향 조정한 사례 144

제8장 가명정보 활용 참고 시나리오 155

1. 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 155
 ■ 고객 구매정보 통계분석 사례 155
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 163
 (1) 유방암·골밀도 감소 진단 AI 개발 사례 163
 (2) 구강질환 진단 AI 개발 사례 178
 (3) 안면골 골절 진단 AI 개발 사례 186
 (4) 자율주행차 주행 시 비정상 상황인지 AI 개발 사례 194
 (5) 고속도로 다인승전용차로 단속 AI 개발 사례 202
 (6)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 개발 210
 (7) 콜센터 직원 실습용 가상상담 시나리오 생성 AI 개발 219
3. 가명정보 활용 유의사례 229

제1장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제도 안내편





제1장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

1 가명정보 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3법*이 시행**('20.8.5.)되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2차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새롭게 마련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에 도입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재식별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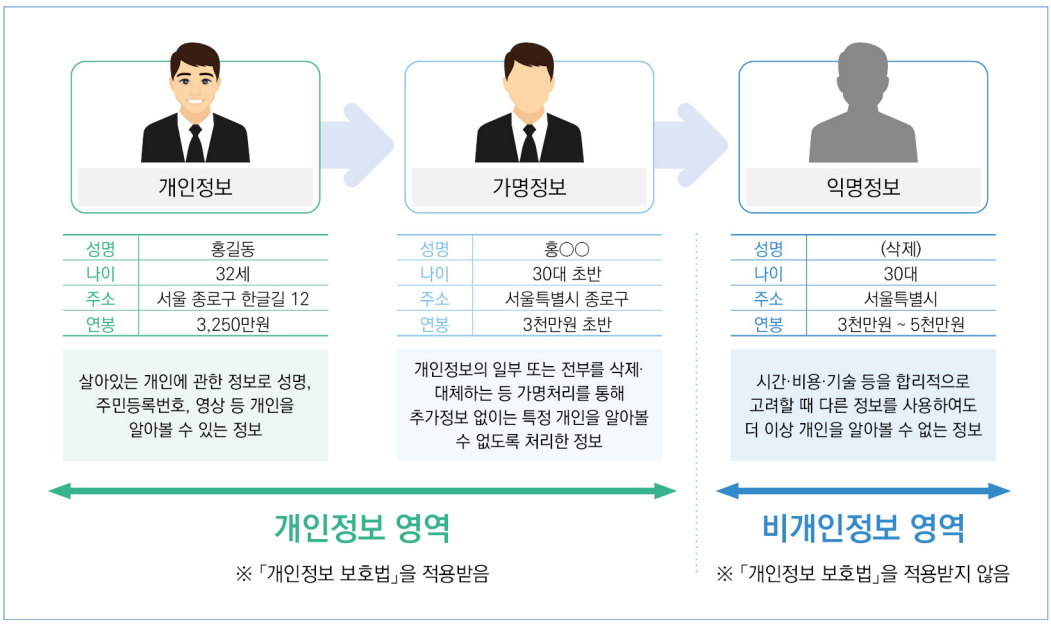
◈ 이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제도의 기본 개념과 취지**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됨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경우 가이드라인 미준수를 사유로 처벌받지는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데이터의 관련 분야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 가능함

2 가명정보란 무엇인가요?

법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 보호법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예를 들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세 주소, 연락처, 얼굴이 드러난 영상 등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해당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허용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활용**할 수 있음

◈ **"가명정보"**는 위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함

- 예를 들어, 성명 중 성을 제외한 이름을 삭제하고 상세 주소를 시·군 단위로 축소하며, 나이를 '30대 초반'처럼 범주화한 경우, 추가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기 어렵게 됨

- 이처럼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통계·학습·연구 등에 필요한 가치는 보존**시킨 정보임
- 다만,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등 재식별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명정보도 여전히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며, **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함

-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예시 (개인정보 vs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직업	가족	예금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01.03	010-9999-3333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 1, 딸1	4,567,900원	50,984,234원

잘못된 가명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직업	가족	예금평균잔액	대출액
		wd4e85d2z4qe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 1, 딸1	4,567,900원	50,984,234원
삭제	삭제	암호화	범주화	개인식별가능			

가명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직업	가족	예금평균잔액	대출액
		wd4e85d2z4qe	창원시 마산회원구		배우자, 아들 1, 딸1	4,567,900원	50,984,234원
삭제	삭제	암호화	범주화	삭제			

익명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직업	가족	예금평균잔액	대출액
		wd4e85d2z4qe	창원시 마산회원구		가족3	400~500만원	4천~5천만원
삭제	삭제	암호화	범주화	삭제	일반화	범주화	범주화

* 특정 시·구에 직업이 국회의원인 사람은 1명뿐이므로 이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어 적절하게 가명처리된 정보가 아님. 이처럼 적정한 가명처리 방법·수준은 데이터의 특성, 처리 목적·환경,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명정보 제도는 어떨 때 활용하나요?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면, **보호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음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제도)**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명정보 제도가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최초 수집 목적범위를 넘어 추가 데이터 활용 수요가 발생하였는데,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데이터 규모가 매우 커 정보주체 수가 많은 경우
 -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로, 현재 정보주체 연락이 어려운 경우

- 기존 **동의받은 수집 목적**이나 **개별 법령상 허용된 범위**만으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 개별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목적 외**로 통계작성, 정책연구 등 **추가적인 활용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 **각기 다른 목적으로 수집·보유** 중인 **여러 기관·기업의 정보를 결합**하여 개별 정보로는 얻기 힘든 **새로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경우

- **분석대상**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경향이나 통계적 특성**인 경우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 특례 제도를 개인정보 '수집' 근거로 쓸 수 있나요?

-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제도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가명정보 처리 특례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 등 **적법한 근거에 따라 이미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2차적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가명정보 제도 외에 가명처리가 쓰이는 경우도 있나요?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없어도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가명정보 특례 제도에서의 가명처리** 외에도 **보호법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맥락에서 가명처리를 사용**하고 있음

⇒ **가명정보 특례 제도에서의 "가명처리"와 다음 맥락에서 수행되는 가명처리는 서로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함**

❶ 보호원칙 실현을 위한 가명처리(보호법 제3조 제4항, 제6항, 제7항)

-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 침해 최소화,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 등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❷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가명처리(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암호화 등의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❸ 개인정보 처리 요건 충족을 위한 가명처리(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고려사항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 최소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가명처리를 수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여기서 잠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범위는?

-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가명정보 처리 특례 외**에 **❶ 보호원칙 실현, ❷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❸ 개인정보 처리 요건 충족 등을 위한 가명처리**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가명처리에 관한 기술 및 기법(별권 제4장) 등은 참고할 수 있음

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 보호법 제3장 제3절

가명정보를 어떻게 활용·제공할 수 있나요?

◈ 가명정보의 활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특례 규정 우선 적용)

- 이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한된 목적 하에 안전하게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 해당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하거나 **다른 부서에 제공**하거나, 내부에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거나, **특정한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됨
 - 이때,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처리 목적과 처리 환경(활용 형태, 처리 장소, 처리 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는
 이렇게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등 활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편, 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가 생성되어 활용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규율하기 위해, **가명처리 단계와 가명정보의 활용 단계**를 **함께 묶어 "가명정보 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적 개념상으로는 "가명처리"가 "가명정보 처리"에 포함되는 개념**이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명처리"(가명정보 생성 단계)와 "가명정보의 처리"(가명정보 활용 단계)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은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이는 **당초 개인정보의 처리 기간과는 무관**하게 가명정보 처리 특례 활용 목적에 필요한 기간으로 새롭게 정하는 것임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목적 설정 없이 미리 가명처리하여 보유하고 있어도 되나요?

-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구체적인 처리 목적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처리 목적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근거한 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보호법 제3조 제7항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 실현을 위한 가명처리, 보호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가명처리** 등은 위 특례 조항과는 **별개의 근거에 따른 것**으로, **해당 목적으로는 가명처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특례 규정 우선 적용)

- 가명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에는,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가명처리 후 제공**하여야 함
 - 이 경우 **제공 목적, 제공 이후의 처리 방법·환경, 제3자가 보유·접근 가능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가명처리**함으로써 **재식별 위험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를 제공 후 발생한 위법행위도 제공자 책임인가요?

- 제공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하고, 이에 따라 생성된 가명정보에 대해 안전조치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제공**한 경우,

⇒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 또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뒤,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 주체의 위법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자만 제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제3자)에게 제공(공개)해도 되나요?

-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공개 등)**하는 경우,
 - 공개의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보호법 제28조의2제1항 위반 우려),
 - **불특정 다수가** 공개한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보호법 제29조의2제2항 위반 우려).

- 따라서, 가명정보의 **불특정 제3자 제공(공개 등)은 사실상 제한**되며, 이 경우에는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재제공해도 되나요?

-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목적에 따라 활용**해야 하며,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중**인 경우(파기하기 전), **새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특례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에 해당**한다면, 가명정보를 **다시 처리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가명정보를 재사용·재제공하려는 때에는, **활용 목적·환경, 처리하려는 자 등이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하며, **재식별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가명처리를 거쳐 활용**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특례 목적에 맞게 다시 판단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 **(예외)** 기관 간 가명정보 제공 계약에 재사용(재제공) 제한, 이용 범위 제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재사용·재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나요?

◈ 가명정보 결합의 유용성

- 가명정보 제도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서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이종 산업간 결합** 등으로 단일 정보만으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새로운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가명정보 결합 수행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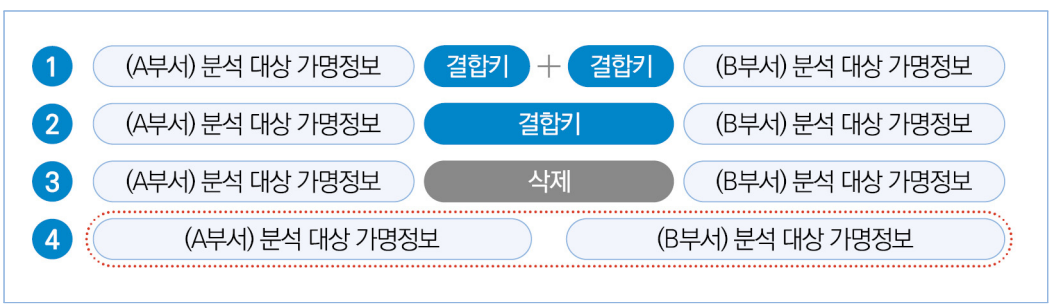
- **단일 기관·기업 내 부서 간 결합** 등 **동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결합 수행이 가능함**
- 한편, **서로 다른 기관(개인정보처리자)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야 함**

*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 에서 기관현황 확인 및 결합신청 가능

◈ 가명정보 결합 방법

- 가명정보 결합은 일반적으로 **동일인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결합키를 안전한 방식으로 생성**하고 해당 **결합키를 기반으로 가명정보를 결합**한 뒤, **결합키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가명정보 내부 결합 방식 예시



- 여러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개인식별 위험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보호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단일 기관이 결합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처리하지 않게 역할을 분리**하여, 결합 과정에서 누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음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구조



- (결합키관리기관) 결합키를 생성·관리하고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
- (결합전문기관) 결합키연계정보를 전달받아 가명정보 결합 후 안전성을 심사(반출심사)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명정보 결합의 세부 방법·절차는 별권 제2장(가명정보 결합) 참고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준수

-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개념에 포함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보호법 제29조)를 이행하여야 함

◈ 가명정보·추가정보의 별도 분리보관 및 접근권한 분리

-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와 **비교·대조할 경우 재식별이 가능**해지므로,

* **(추가정보)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로,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전부·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방식(알고리즘 등), 삭제·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테이블 등), 가명처리에 사용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추가정보가 재식별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작성·보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 이용내역,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사항이 있나요?

◈ 가명정보 고의적인 재식별 시도 금지

-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됨**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정보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함
- 즉, 추가정보를 사용하여 원래 정보로 복원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나 공개된 정보와의 결합 또는 대조·비교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 등은 모두 금지됨

◈ 가명정보의 처리중지 및 회수·파기 의무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처리중지, 회수·파기 등과 같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함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 활용 중 의도치 않게 재식별이 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가치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개인을 바로 알아보기 어렵도록 처리한 정보로, **재식별 위험이 잔존하는 것은 가명정보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 즉, **가명정보 제도는** 가명정보의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재식별 위험이 전혀 없는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식별 위험을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통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에 **보호법은 고의적인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도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이 식별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다만,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이 식별된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중지 및 회수·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완료하여야만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명처리 후에도 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는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들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여야만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임

가명정보 적용 제외 규정

-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1항
-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규정 외의 보호법 조항**은 **가명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예컨대,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에 따라서 처리 목적의 범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6조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 시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가명정보는 파기하여야 함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도 국외이전이 가능한가요?

-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가명정보의 적용범위(보호법 제28조의7)에서 국외이전 관련 조항(보호법 제28조의8)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가명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명정보 국외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가능한가요?

- 처리정지 요구(보호법 제37조)는 가명정보의 적용범위(보호법 제28조의7)에서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명처리되기 전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향후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해 **사전적으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대법원 판결】** (대법 2025.7.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장
가명처리 절차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제도 안내편





제2장 가명처리 절차

◈ 가명정보 특례 제도에 따라 수행하는 가명처리는 단순히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는 기술적 처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목적 설정, 가명처리, 검토, 사후 관리**까지 **재식별 위험을 낮추고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처리·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전준비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안전한 관리

① **사전준비 : 왜 가명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지를 정리하는 단계**

- 처리 목적을 설정·검토하고, 해당 목적에 필요한 가명처리 대상을 선정

② **위험성 검토 : 가명처리 전,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을 미리 검토하는 단계**

- 가명정보 활용 시의 위험성을 먼저 검토하여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할 것인지를 판단

③ **가명처리 : 위험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가명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재식별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명처리 수행

④ **적정성 검토 :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검토하는 단계**

- 처리 목적이 적절한지, 가명처리 이용항목이 잘 선정되었는지, 위험도 판단 및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해당 가명정보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⑤ **안전한 관리 : 가명정보를 활용하면서 재식별 위험을 지속 관리하는 단계**

1 사전 준비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설정·검토하고 해당 목적에 필요한 가명처리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

① 가명정보 처리 목적 설정

◈ 가명정보 제도는 **보호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해 적용됨

- 따라서 가명정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중** 어떤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지를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이 때, 처리 목적은 "연구", "통계", "AI 학습", "공익 활용"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며, **무엇을 연구·분석·검증하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

 * (**부적절한 목적 설정 예시**) 신제품 고도화를 위한 과학적 연구 수행
 * (**적절한 목적 설정 예시**) △△ AI 서비스의 추천 성능 개선을 위해 연령대·시간별 서비스 활용 패턴과 서비스 결제금액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

◈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지만 **목적에 필요한 정보 항목을 명확히 선별**할 수 있고,

-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방법·수준 결정,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해당 목적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따른 것임

"통계작성" 목적이란?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하며,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 분석, 결합,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통계작성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에 해당함
- 시장조사를 위한 통계,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통계 등 **상업적 성격을 가진 통계**도 **통계작성 목적에 포함됨**

"통계작성" 목적 예시

▸ **(지역 편의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연령별 시설 이용통계 작성)**
- 지방자치단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연령, 성별 등)를 작성하려는 경우

▸ **(쇼핑몰 마케팅 전략 설계를 위한 지역별 판매통계 작성)**
-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등에서 주간·월간 단위로 판매상품의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판매상품에 대한 지역별 통계(품번, 품명, 재고, 판매수량, 금액)를 작성하고자 하려는 경우

▸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 분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유동인구 통계 작성)**
- 지하철 역사의 시간대별 밀집도를 분석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역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역을 블러링 또는 마스킹 처리한 뒤, 사람의 형상과 흐름만을 파악하여 통계적 수치(시간대별 이용객 수, 구역별 혼잡도 등)을 산출하려는 경우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로 통계작성 후 1:1 맞춤형 타겟 마케팅도 가능한가요?

- 통계는 집합적인 데이터로서 이름, 연락처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명정보 특례 제도의 '통계작성'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타겟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보호법 제28조의5에 따라 가명정보를 재식별하는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되므로, 1:1 맞춤형 타겟 마케팅 등 특정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전제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보호법 제28조의2에서 정한 '통계작성' 목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연구" 목적이란?

- **"과학적 연구"**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를 의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응용 연구를 모두 포함함**

*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말함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따라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연구,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산업적 연구**도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학적 연구 목적에 포함됨**
- 또한, 과학적 연구는 **공적 자금으로 수행되는 연구**에 한정되지 않으며, **민간의 투자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도 포함됨

여기서 잠깐! AI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목적도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나요?

■ 보호법에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는
- 특정 기술 분야나 데이터 처리 방식(AI 학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 AI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는
- 일반적으로 가설 설정, 데이터 분석, 성능 검증, 반복적 개선 등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활동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알고리즘 성능 개선, 모델 정확도 향상, AI 서비스의 기능·품질 고도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학습·분석하는 행위는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목적 예시

▸ (감염병 확산 요인 분석을 위한 생활패턴 분석연구)

- 코로나19 확산 요인 분석을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여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는 가설 검증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분석연구)

- 연령, 성별에 따른 체중관리 및 운동 효과를 분석하여 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또는 운동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맥박, 운동량, 평균 수면시간 등의 정보와 기존에 보유한 성별, 연령, 체중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분석·활용하는 경우

▸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상권·유동인구 분석 연구)

- A 지자체에서 특정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국내의 유사 관광지 주변의 상권과 유동인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동인구, 소비 패턴, 상권 분포 등에 대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비교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 (스팸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통신 데이터 결합 연구)

- 스팸차단 기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스팸신고 정보와 민간 통신사가 보유한 스팸검출 정보를 가명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여 스팸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 (화물·특수차 운행실태 분석 및 물류 정책 진단을 위한 데이터 결합 연구)

- 국가 물류체계를 진단 및 효율적인 물류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고속도로 통행정보(이용 일시, 입출구/영업소 정보 등)와 관련 부처가 보유한 화물·특수차 자동차 등록정보를 가명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여 차량별 이용패턴 및 실제 운행 실태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AI 개발·고도화를 위한 “과학적 연구” 목적 예시

▸ (보이스피싱 위험 탐지 AI 개발을 위한 음성데이터 분석 연구)

-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음성데이터를 음성인식(STT) 기술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한 뒤 가명처리하여 범죄 패턴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려는 경우

▸ (유방암·골밀도 감소 여부 진단 AI 개발 연구)

- 유방암 진단 자동화 및 골밀도 감소 여부 확인을 위한 AI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병원이 보유한 유방암 환자의 흉부CT 영상, 골밀도 검사 기록 등 이미지데이터와 임상병리정보(텍스트)에서 개인식별 위험이 있는 메타데이터와 환자 관련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AI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자율주행 자동차용 비정상 상황인식 AI 고도화 연구)

- 도로 주행 중 발생하는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급정거 등 비정상 상황을 인지하는 AI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수집된 도로 주행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식별 위험영역을 블러링 처리하여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려는 경우

▸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 개발 연구)

-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AI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 간 일상대화 텍스트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등 개인식별 위험성이 높은 항목을 랜덤 ID로 치환하거나 삭제·마스킹 처리하고, 이를 챗봇의 대화엔진 학습에 활용하려는 경우

▸ (지능형 CCTV 기반 사고예방, 불법탐지 AI 기술개발 연구)

- 공공장소의 안전사고 감지, 불법 현수막 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CCTV 영상을 사람의 형상만 파악하고 특정 개인은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한 뒤, 이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여 통계적 특징을 분석하려는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란?

- **"공익적 기록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함
- 공익적 기록보존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예시

▸ **(현대사 연구를 위한 인물정보 기록 보존)**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록·보존하고자 하려는 경우

▸ **(감염병 대응기록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보존)**
- 연구소가 코로나19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공익적 연구가치가 있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기록·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 목적 설정 시 '확장 가능한 목적' 고려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사전에 단일 목적으로만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향후 **유사 목적 활용 시** 목적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가명처리·적정성 검토 수행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어려움 존재

예시 **범용 목적 AI 개발 확산으로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응용·고도화, 미세조정 빈번**

(대화형 AI) 고객 민원용 챗봇 AI ➜ 정신건강상담, 법률상담 도구로 응용
(인식형 AI) 직원 출입관리용(이미지 인식) AI ➜ 자율주행, 의료진단 목적으로 응용
(추천형 AI) 운동계획 추천용 AI ➜ 음식·영양제 추천 목적으로 응용

- 이에 **최초 가명정보 처리 목적 설정 시**, 단일 목적 외에 향후 **'유사 목적으로 확장 가능한 목적 범위'까지 사전에 설정**할 수 있음

예시

〈최초 목적〉 "의료영상 분석을 통한 폐질환 예측 AI 개발 연구"
〈확장 가능목적〉 "질병예측을 위한 추가분석", "유사 질병진단 응용 AI 개발"
➜ 최초 목적달성 이후 승인받은 **확장 목적에 한해 별도 처리·검토 없이 활용 가능**
※ 단, 적정성 검토 시 확장 가능목적까지 고려하여 가명처리 방법·수준 검토 필요

- **(제한조건) ❶최초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추가 분석** 목적 또는 **❷동일연구 과정에서 파생되는 유사 목적의 응용연구**로 한정
 - 또한, **확장 목적**은 **최초 목적과 동일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야 함

-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 선정,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일련의 과정 또한 단일 목적 외에 확장 가능한 목적 범위까지 고려하여 수행

◈ 가명정보 처리 기간 설정 방법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이때,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은 해당 가명처리의 대상이 된 **기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과는 별도로 설정 가능함**

※ 다만, 가명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임

예시 ①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맞게 가명정보 처리 기간 정하기

‣ A기관이 특정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 간의 이용자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6개월 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프로젝트 기간을 고려하여 가명정보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여 활용.
만약, 목표한 6개월 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실제 필요한 기간(예. 2개월)만큼 처리 기간을 연장하여 활용할 수 있음

예시 ② 장기간 분석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처리 기간 정하기

‣ B연구기관이 질병 발생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그간 축적되어 있는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5년 동안 장기 시계열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 연구 설계상 장기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연구 기간에 맞추어 가명정보 처리 기간을 5년으로 길게 설정

예시 ③ 기존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별도로 가명정보 처리 기간 정하기

‣ C기관이 민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민원인의 동의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년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민원 유형, △응답 기한, △민원 원인 분석을 위한 민원 통계작성을 수행하고자 함

➜ 기관은 민원데이터를 가명처리한 후 통계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가명정보 처리 기간을 2년으로 별도로 설정하여 활용

➜ 이 경우, 기존 민원 데이터는 보유기간인 1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지만,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설정한 가명처리 기간인 2년 동안 활용할 수 있음

- 기존 활용 중인 **가명정보를 다른 특례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기존에 처리 중인 **가명정보가 파기되기 전**이라면, **새로운 목적에 맞는 처리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목적에 따른 처리 기간과 새로운 목적에 따른 처리 기간은 각각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각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가명정보는 파기하여야 함

예시 ④ 가명정보 처리 중 새로운 특례 목적으로 재사용·추가사용하려는 경우

‣ 연구기관이 A목적(질병원인 분석)으로 가명정보 처리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활용 중인데, 연구 진행 중 새로운 B목적(예측모델 개발, 필요기간 3년)가 필요해진 경우

➜ 기존 A목적 활용으로 가명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B목적에 맞는 새로운 가명정보 처리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활용 가능

➜ 이 경우, A연구 종료 시 A목적 가명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B연구 종료 시 B목적 가명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함

② 가명처리 대상 선정

◈ **세부적인 처리 목적이 구체화**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야 함

- 어떤 데이터셋을 쓸지, 어떤 항목(변수)가 필요한지, 어느 기간·범위의 데이터가 필요한지 등을 정리하여 가명처리 대상으로 선정

가명처리 대상 항목 선정(예시)

▸ **(가명처리 목적) 성별**과 **지역**에 따른 **구매액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 **(개인정보파일 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구매상품, **구매액**
▸ **(가명처리·활용 대상 항목) 성별, 주소, 구매액**
* 분석 목적과 상관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항목만 선별

여기서 잠깐!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도 가명처리해서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특례'(보호법 제3장 제3절)는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도 가명처리·활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해시처리하여 가명정보 결합키로 활용하는 등

■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만 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른 **가명처리·활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로서, '동의'를 처리 근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가명정보 처리 특례 조항 또한 처리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③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 작성

◈ 가명정보 처리 목적과 대상이 정해졌다면,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를 작성**
※ 별권 제5장 서식❷ 활용

◈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가명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 별권 제5장 서식❶ 활용 해당 기관에 신청서와 「**가명정보 활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가명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동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자체적으로 **가명처리하여 직접 활용**하는 경우,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작성·제출은 생략 가능**

④ 내부규정 마련·검토

◈ **가명정보 처리 목적 및 대상이 설정**되었다면, **향후 새로운 개인정보(가명정보)가 생성**되고 해당 정보를 **별도의 목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므로,

- 이를 위해 필요한 부서, 담당자별 **역할·책임 등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 **내부 규정, 절차 등을 수립·마련해둘 필요**가 있음

내부관리계획 검토 (필요 시)

※ 상세내용은 별권 제6장 참조

-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필요**
- 다만, 가명정보 처리를 위해 **반드시 별도의 내부관리계획을 새로 작성·마련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 기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에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고, **가명정보 처리에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면 **기존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존 내부관리계획에 **가명정보 처리 특성에 맞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한 부분만 보완·개정**하거나, 가명정보 관련 내부관리계획만 **별도로 추가 마련**하는 것도 가능
 -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내부관리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 가명정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절차와 체계를 갖추는 것임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이용자의 내부관리계획 작성·제출 필요여부

- 내부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는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를 직접 보관·관리할 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가명정보가 **이용자 소속기관으로 외부 반출되지 않고, 제공기관의 통제된 환경** 또는 **특정 안전한 공간에서만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소속기관이 해당 가명정보를 직접 보관·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 소속기관의 **내부관리계획을 별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위탁계약 작성 (위탁 시)

※ 상세내용은 별권 제6장 참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업무** 또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분석, 서비스 개발·고도화 등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기관·기업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 관련 계약문서를 작성하고, 처리방침에 가명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자 관리·감독 등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야 함